

1930년대 지방행정관청사의 비정기적 건축인가 및 예산배부

김명선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Approval and Budget Allocation for Construc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ve Offices of Colonial *Joseon* in the 1930s

Myungsun Kim
Division of Architecture, Sunmoon University

요약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지침에 따라 조선시대에 지어진 한옥 관청사를 지방행정관청사(도청사, 부청사, 군청사)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1920년대 들어서 신축되는 지방행정관청사도 있었지만 한옥을 그대로 전용하는 경우도 흔했다. 따라서 1930년대 식민지조선의 지방행정관청사 건축상태는 대체로 열악했다. 당시 지방행정관청사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관청(도, 부, 군)을 관할하는 각도가 조선총독부에 인가를 신청하여 그 인가를 받고 예산을 배부받아야 했다. 이 각도는 매년 봄 다음 해 세출계획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했는데, 그 안에 관할하는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계획을 삽입했다. 이 세출계획서는 각도가 조선총독부에 관할 지방행정관청사 건축의 인가를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통로였다. 한편 각도는 비정기적으로도 건축인가를 신청했고, 조선총독부는 이에 대해서도 인가하고 예산을 배부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는 일제강점기 지방행정 관련 조선총독부 공문서철 5개에 이 비정기적인 건축인가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공문서 건이 묶여 있다. 본 연구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도가 비정기적으로 건축인가를 신청한 사유, 조선총독부의 인가와 예산배부 과정, 이에 대한 각도의 대응을 밝힌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 공문서와 조선총독부관보를 비롯한 문헌 자료를 분석한다.

Abstract Many government offices (hanok) built during the Joseon Dynasty were converted into local administrative offices of colonial *Joseon*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lthough some local administrative offices had been newly constructed since the 1920s, many hanok remained as they were. Therefore, the condition of the office buildings was generally poor in the 1930s. Hence, it was necessary to obtain the approval and get the budget allocated from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o build a local administrative office. Each *Do* submitted an expenditure plan for the following year every spring together with the construction plans of offices under its jurisdiction. This passage of request was followed regularly for approval. Meanwhile, each *Do* also produced official documents to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for approval irregularly in the 1930s. These documents remain tied in 5 folders kept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is study analyzes their contents and reveals why each *Do* requested approval irregularly. The analysis also focuses on the process from request to approval and the budget allocation.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is followed to analyze the literature data, such as the documents and the official gazett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Keywords : Local Administrative Office, Applications for Construction Approval, Budget Allocation, Official Document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dministrative Procedure

*Corresponding Author : Myungsun Kim(Sunmoon Univ.)

email: rosaria@sunmoon.ac.kr

Received February 4, 2022

Accepted April 1, 2022

Revised March 2, 2022

Published April 30, 2022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일제강점기 지방행정관청의 청사, 즉 도·부·군·도청사(道·府·郡·島廳舍)가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방행정관청을 관할하는 각도(各道)가 조선총독부 내무국(이하 내무국)에 인가를 신청해야 했다. 신청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정기적 신청의 경우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1927년 및 1930년대 정기적 신청의 근거규정과 절차, 그에 사용된 문서의 형식과 내용이 기존연구를 통해 밝혀졌다[1,2]. 즉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회계사무장정(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會計事務章程)」(이하 「회계사무장정」)[3] 제25조에 따라 각도가 매년 4월말까지 내무국에 차년도(次年度) 세출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그 안에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이 필요한 사유, 필요 경비, 간략한 배치도·평면도, 건축신청하는 청사들의 도내(道內)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각도는 매년 의무적으로 차년도 세출계획서를 제출했으므로 신청도 정기적이었던 셈이다.

이에 비해 각도의 비정기적 신청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 없다. 다만 국가기록원이 2006년 발간한 지방행정 관련 조선총독부공문서(이하 '공문서')의 해제(解題)인 『일제문서해제(지방행정1)』에서 1930년대 4개 년도에 각도가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인가를 신청한 공문서와 조선총독부가 이에 대응하여 도에 보낸 공문서 등을 묶은 공문서철 5개를 '지방청영선관계서류(地方廳營繕關係書類)'로 분류한 바 있다[4].

본 연구의 목적은 이 5개 공문서철에 묶여 있는 공문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1930년대 각도가 비정기적으로 지방행정관청사 건축의 인가를 신청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인가신청부터 인가까지 행정절차는 어떠한지 밝히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기본자료가 되는 5개 철에 묶인 건, 조선총독부판보, 관련 내용을 담은 일제강점기 간행된 신문, 잡지, 단행본 등 1차 자료와 공문서 해제나 일제강점기 지방행정관청사 연구 등 2차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취한다.

1.2 기본자료

전술한 해제는 9개 공문서철을 '지방청영선관계서류'로 분류했는데[4], 이중 5개 철만 기본자료로 삼는 이유를 밝혀둘 필요가 있겠다. 9개 중에는 1917년 생산된 같은 이름의 3개 철 『지방청건물대장(地方廳建物臺帳)』(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2574, CJA0002575,

CJA0002576. 이후 관리번호만 씌)과 1931년 생산된 철 『영선관계각도요구서(營繕關係各道要求書)』(CJA0002802)가 포함된다. 앞의 3개는 1917년 당시 여러 지방행정관청사의 '건물대장'을 모아놓은 철이고, 뒤의 1개는 1931년 제출한 차년도 세출계획서를 내무국이 모아놓은 철로[4], 둘 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본자료로 삼는 나머지 5개 철은 ① 『지방청영선관계서류(地方廳營繕關係書類)』(CJA0002801, 1931년 생산, 30건(件) 포함), ② 『지방청영선관계(地方廳營繕關係)』(CJA0002800, 1931, 13건), ③ 『지방청영선관계서류(地方廳營繕關係書類)』(CJA0002950, 1933, 39건), ④ 『지방청영선관계서류(地方廳營繕關係書類)』(CJA0003176, 1936, 23건), ⑤ 『지방청영선관계철(地方廳營繕關係綴)』(CJA0003247, 1937, 34건)이다(번호는 이후 본문 서술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매김).

이 안에 총 139건이 묶여 있는데, 해당내용은 없지만 국가기록원이 건으로 처리한 5개 철 각각의 표지 및 색인 총 10건, 지방행정관청 직원관사 신축 및 군청사 위치변경 관련 6건, 잘못 편철된 세출계획서 2건은 연구목적과 무관하다. 그밖에 문서에 날짜·발신자·송신자가 없는 등 내용상 어떤 맥락에서 생산되었는지 알 수 없는 7건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이들 25건을 제외한 5개 철의 114건이 본 연구의 기본자료가 된다.

그런데 기본자료는 인가신청 이후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다. 신청 건만 있거나 인가 건만 있거나 그 중간단계 건들만 있는 식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개별 건의 진행을 체계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여러 건을 상호참조하면서 연구목적에 달성하고자 한다.

2. 비정기적 건축인가신청 사유

기본자료를 살펴보면 각도가 비정기적으로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인가를 신청한 사유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1 노후한 청사의 도괴(倒壞)위험과 열악한 실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유가 노후한 청사가 도괴위험을 비롯해 여러 난관에 처해 도저히 청사로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21건이 이 사유로 신청된다. 1건에서 1개 청사의 건축인가를 신청하기도 하지만 여러 청사에

대해 신청하기도 해서, 이 사유로 신청되는 청사 수는 건수에 비해 훨씬 많다. 13개 도청사 전체, 9개 부청사, 47개 군청사로 총 68개 청사가 이 사유로 신청된다. 도청사는 100%였고 부청사는 1931~7년 14~18개 있었으므로 50% 이상이며 군청사는 218개 중 21.6%를 차지한다. 군청사 신청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는데, 특별한 이유는 찾지 못했다.

사유로 제시된 도괴위험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둥에 흰개미가 발생하거나 목부재가 썩어서 건물이 기울고 지붕 한쪽이 내려앉고 천장이 탈락하는 등 위험한 상황인데, 눈비를 때나 해빙기에 누수 발생 등 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추가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시각적으로 호소하기 위해 건물 사진이 첨부되기도 한다. 화천군청사(강원, Fig. 1)와 화순군청사(전남, Fig. 2)의 외관사진이 대표적이는데, 모서리기둥 머리나 처마 끝에 장대를 괴어 도괴를 막고 있는 모습이다.



Fig. 1. Whacheon-gun office source: ③CJA0002950(1933)



Fig. 2. Whasoon-gun office source: ③CJA0002950(1933)

흔히 도괴위험과 함께 제시되는 사유는 실내 기둥들 때문에 집무공간이 모자라고 가구배치가 어려우며, 실내 환기·채광이 불량하여 직원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근무조건이 나쁘다는 것이다. 실내사진까지 첨부하여 이를 강조한 사례로 단양군청사(충북, Fig. 3)와 의성군청사(경북, Fig. 4)가 있다. Fig. 1~Fig. 4의 청사는 모두 17세기에 지어진 한옥을 전용하면서 임시방편적 수선을 더해 온 경우이다.



Fig. 3. Danyang-gun office source: ③CJA0002950(1933)



Fig. 4. Uiseong-gun office source: ⑤CJA0003247(1937)

2.2 수해로 청사 일부 붕괴나 부지 유실(流失)

두 번째 사유는 수해로 인한 것인데, 3건에서 3개 청사가 등장한다. 1930년 7월 초순부터 하순까지 이어진 폭우로 박천군청사(평북)의 일부가 무너지자 그해 9월 4일 도는 내무국에 이 상황을 보고하며 이듬해 신축하도록 인가해 주기를 신청한다(「군청사신축에관한건-평안북도(郡廳舍新築二關スル件-平安北道)」, ①). 응급책으로 장대를 외벽에 기대어 붕괴를 막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었다(Fig. 5).

양양군청사(강원)의 경우 세출계획서를 통한 정기적 건축인가신청이 승인되어 1936년 5월 신축예산까지 배부되었으나, 그해 8월 28일 닥친 태풍으로 부지가 하천에 휩쓸려버린다. 이에 강원은 이미 배부된 예산으로 양양군청사 대신 양구군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인가를 신청한다(「군청사신영계획변경의건-강원도(郡廳舍新營計劃變更ノ件-江原道)」, ④). 그보다 몇 달 전(1931.4.10.) 도는 수해 입은 양양군청사의 위험한 상태를 보고하는 건(「군청사신축실시계획의건-각도(郡廳舍新築實施計劃ノ件-各道)」, ④)을 내무국에 제출했는데, 여기에서 장대를 외벽에 기대어 붕괴를 막고 있는 사진(Fig. 6)을 첨부한 바 있다.



Fig. 5. Bakcheon-gun office source: ①CJA0002801(1931)



Fig. 6. Yangyang-gun office source: ④CJA0003176(1936)

순창군청사(전북)도 1931년 4월 23일 신축인가받은 정읍군청사를 대신하여 신청된다. 1930년 여름 호우로 순창군청사의 기초와 지붕에 풍수해를 입은 후 1931년 4월 말 썩은 기둥뿌리가 기초에서 탈락되는 일이 발생하자 전북은 그해 5월 4일 정읍군청사 대신 순창군청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인가해 주기를 신청한다(「군청사신영비에산배부의건-전라북도(郡廳舍新營費豫算配賦ノ件-全羅北道)」, ①).

박천·양양군청사는 해당 건에서 19세기 중반에 지어진 한옥으로 나온다. 순창군청사의 건물형식에 대해 해당 건은 말하지 않지만, 전북의 명승고적을 소개한 책자에 실린 사진(Fig. 7)을 보면 꽤 큰 한옥의 정면 중앙에 현관을 내단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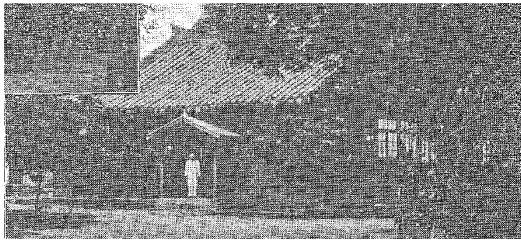


Fig. 7. *Sunchang-gun* office
sourc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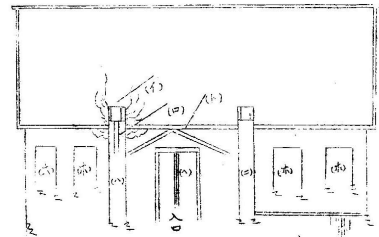


Fig. 10. Elevation of *Hwanghae-do* office showing the point of fire(chimney)
source: ④CJA0003176(1936)

2.3 화재로 인한 청사 소실(燒失)

세 번째 사유는 화재로 인한 것으로, 3건에 3개 청사가 있다. 1931년 1월 11일 화재로 철산군청사(평북)가 소실된 경우(「철산군청사재해복구비의건(鐵山郡廳舍災害復舊費ノ件)」, ①), 1935년 10월 13일 화재로 홍원군청사(함남)가 반소(半燒)된 경우(「홍원군청사실화에관한건-함경남도(洪原郡廳舍失火ニ關スル件-咸鏡南道)」, ④) 1936년 2월 6일 실화로 황해도청사 일부(토목과 사용 건물)가 소실된 경우(「도청사재해복구에관한건-황해도(道廳舍災害復舊ニ關スル件-黃海道)」, ④)이다.

이들 신청 건에서 공통적으로 전반부에 화재원인·소실 정도·처리경과와 복구계획·비용을 보고하고 후반부에 인가를 신청한다. 전반부에서 소실부분을 표시한 평면도(Fig. 7, Fig. 8)나 발화지점을 표시한 입면도(Fig. 9)를 첨부함으로써 상황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한편 신축(철산)·개축(홍원)·증개축(황해) 사유의 당위성과 제시하는 공사비의 적정성을 설득하고 있다.



Fig. 11. Front view of *Hongwon-gun* Office
source: [6]

3. 신청부터 예산배부까지 행정절차

3.1 8단계의 절차

기본자료 여러 건을 상호참조하면 2장에서 살펴본 3가지 사유로 건축인가신청된 이후 예산 배부까지 행정절차를 8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총 73건이 이들 단계에서 생산된 것들인데, 1단계) 각도가 내무국(지방과)에 건축인가를 신청한다. 이때 공사비를 개산(概算)하여 예산 배부(配賦)도 신청한다(21건). 2단계) 내무국은 이를 취합하여 재무국(회계과)에 조회(照會)한다(10건). 3단계) 재무국은 사정(査定)을 통해 인가대상을 결정하고 예산을 1차결정하여 통보하면서 인가된 도로 하여금 ‘공사실시계획서(工事實施計劃書)’를 “조사”시켜 급히 회부(回附)하라는 건을 내무국에 내시(內示)한다(4건). 4단계) 내무국은 내무국장 및 회계과장 명의로 인가 및 1차결정 예산을 통보하며 공사실시계획서를 회송(回送)하도록 해당 도에 통첩(通牒)한다(5건). 5단계) 도는 1차결정 예산에 맞춰 공사실시계획서를 조사(작성)하여 내무국에 회송한다(14건). 6단계) 내무국은 이를 수합하여 재무국에 조회한다(1건). 7단계) 재무국은 공사실시계획서를 심의하여 예산을 최종결정한 후 내무국에 회송한다(1건). 8단계) 내무국은 도에 최종결정된 공사비 예산을 배부한다(17건). 이상의 절차를 Table 1에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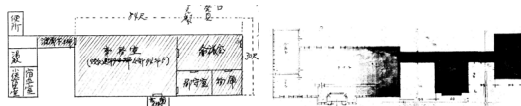


Fig. 8. Plan of *Cheolsan-gun* office's fire loss (shaded part: fire loss)
source: ①CJA0002801(1931)

Fig. 9. Plan of *Hongwon-gun* office's fire loss (black part: fire loss)
source: ④CJA0003176(1936)

화재가 난 세 청사 모두 해당 건에서 간이목구조 양식 건물로 소개되는데, 추운 북쪽지방에 있고 난방장치 취급 실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공통점을 보인다. 홍원군청사의 경우 화재 나기 10개월 전인 1934년 12월 14일 신축낙성식을 가진 직후 모습이 신문에 실린 바 있는데(Fig. 11), 소실된 부분을 표시한 평면도(Fig. 9)와 비교하면 사진 좌측 본관의 일부, 우측 부속건물 2동, 연결복도가 모두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Administrative procedures from application to budget allocation

step	from	documents	to
step 1	To(道)	request for construction approval	HAB*)
↓			
step 2	HAB	sending the request	FB**)
↓			
step 3	FB	selection of approval targets & (first) budget decision	HAB
↓			
step 4	HAB	notification of the approval & the budget	To
↓			
step 5	To	submission of construction implementation plan	HAB
↓			
step 6	HAB	sending the construction plan	FB
↓			
step 7	FB	(final) budget decision	HAB
↓			
step 8	HAB	final budget distribution	To

*) HAB: Home Affairs Bureau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31-1937)

***) FB: Finance Bureau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31-1937)

3.2 예산삭감

도가 1단계에서 건축인가를 신청할 때 개산하여 제시하는 공사비가 그대로 8단계에서 최종예산으로 배부되는 예는 없다. 예산은 재무국에서 2차레, 내무국에서 1차레 조정된다. 우선 예산결정권을 가진 재무국은 3단계에서 도가 제출한 공사비 개산서를 심의하여 예산을 1차결정하면서 조정한다. 기본자료에서 예산은 이때 모두 삭감된다. 또한 6단계에서 도가 제출한 공사실시계획서를 심의하여 예산을 최종결정하면서 재조정한다. 공사실시계획서가 1차결정 예산에 맞춘 것이라 거의 그대로 최종예산으로 결정된 듯하다.

내무국도 4단계에서 1차결정된 예산을 도에 통첩하면서 조정한다. 매번 삭감되는데, 그 명목과 방식은 다양하다. 1931년의 경우 “예산 1할 보유”라는 명목으로 인가 항목 각각에 대해 10%씩 일률적으로 삭감한다(「소화6년도도군청사증개축공사실시계획의건(昭和六年度道郡廳舍増改築工事實施計劃ノ件)」, ①). 비상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1933년의 경우 “각도의 군청사 요망이 상당히 통절”하다면서 1차결정 예산 총액 범위 안에서 인가 개수를 늘리는 데

신 개별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한다(「소화8년도군청사신축실시계획의건-각도(昭和八年度郡廳舍新築實施計劃ノ件-各道)」, ③). 1936년과 1937년의 경우 전시체제 하에서 물가상승으로 건축공사비가 올라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삭감한다. 1936년에는 “군청사 개소당 공사비 11,000원 미만으로는 건축하기 어려워서 1개소를 감소하여 8개소 신축하기로 한다”(「군청사신축실시계획의건-각도(郡廳舍新築實施計劃ノ件-各道)」, ④). 1937년에는 1차결정 예산 총액 범위에서 10개소를 “가장 긴급한” 8개소로 줄이는 대신 개당 건축비를 늘린다(「군청사신축계획의건(郡廳舍新築計劃ノ件)」, ⑤).

이렇게 하여 기본자료에서 도가 신청한 예산은 모두 삭감된다. 그런데 재무국은 각도가 제출한 개별 청사의 건축공사비 개산서 및 공사실시계획서를 심의하여 개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내무국은 재무국이 1차결정한 총예산 내에서 각 청사의 전반적 상태나 물가를 고려하여 일괄 삭감하거나 예산배부 대상을 조정하는 차이를 보인다.

3.3 예산삭감에 대한 각도의 대응

예산삭감에 대한 도의 대응도 여럿 발견된다. 전북은 1단계 신청 때 익산군청사 신축 공사비로 25,000원이 필요하나 10,000원은 기부금으로 해결하고 고재(古材)를 사용하여 비용을 아낄 테니 15,000원만이라도 배부해달라면서 아예 처음부터 신청예산을 줄였다(「익산군청사이전개축방법의건품신-전라북도(益山郡廳舍移轉改築方法ノ件稟申-全羅北道)」, ⑤). 전남은 1단계에서(1936.8.29.) 도청사의 건축인가를 신청했으나 몇 달이 지나도 답이 없자 1937년 3월 15일 예산배부가 “곤란하면” 예산이 적게 드는 부속건물이라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다(「소화12년도국비영선계획예관한건-전라남도(昭和十二年度國費營繕計劃ニ關スル件-全羅南道)」, ⑤). 강원은 4단계에서 강원도청사 개축을 위한 1차결정 예산을 통첩 받은 후 “진중하게 고려를 거듭하여 경비절감을 도모했지만 아무리 절약해도” 공사비가 부족하니 예산증배해줄기를 요청한다(「강원도청사증개축비예산배부의건-강원도(江原道廳舍増改築費豫算配賦ノ件-江原道)」, ①). 이런 품신(稟申)에 대해 내무국이 도가 원하는 회답을 한 건은 보이지 않는다.

경기는 4단계에서 통첩받은 예산으로는 인가된 김포군청사를 건축하기에는 그 건물형태나 부지 상황상 불가능하다면서 대신 “배부된 예산 안에서” 수원군청사를 개축하겠다고 한다. 이에 내무국은 예산변경이 없으므로

승인한다고 회신한다(군청사신축계획의건-경기도(郡廳舍新築計劃ノ件)), ⑤). 충남은 인가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첩받은 후 가장 위험한 상태인 아산군청 회의실만이라도 건축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며 공사비 5,700원을 요청한다(「예산증액신청의건-충청남도(豫算增額申請ノ件-忠淸南道)」, ④). 내무국은 그해 배부예산의 잔액인 2,500원을 배부한다(「군청사증축에관한건-충청남도(郡廳舍增築ニ關スル件-충청남도)」, ④). 평북은 4단계에서 통첩받은 예산으로는 신의주부청사의 개축 “계획 불능이지만” 입찰을 통해 공사비를 줄여보겠다고 보고한다(「소화6년도부군청사신축실시계획의건 평안북도지사」, ②).

이러한 대응은 1,5,8단계에서 각도가 내무국에 문서를 발송하고 나서 다음단계가 진행되기 이전에 혹은 5단계 발송 이전에, 즉 단계와 단계 사이에 추가 건을 생산한 것으로, 41건 발견된다. 1단계 신청 후 내무국 뿐 아니라 재무국, 정무총감 심지어 조선총독에게 인가·예산 배부를 촉구하는 문서를 별도 발송한 29건, 5단계 공사 실시계획서 발송 전 배부받은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증액을 요청하는 1건, 5단계 후 계획에 변경이 생겨 내무국에 재발송한 4건, 8단계 최종예산을 배부받은 후 예산증액을 요구하거나 공사내용에 변경을 보고하는 7건이다. 1단계 신청 이후 발송 건이 특히 많고 발송처가 내무국 뿐 아니라 관련된 여러 부국(部局)이라는 점에서, 도가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했음을 보여준다.

이상, 건의 내용 뿐 아니라 건수로 보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도가 상당히 절박하게 대응했음을 엿볼 수 있다.

3.4 ‘공사실시계획조사요령’에 따른 공사실시계획서

4단계에서 내무국이 도에 내리는 통첩에는 항상 ‘공사 실시계획서’를 조속히 보고하라는 요구가 있다. 그런데 도는 이 공사실시계획서를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 없고 3단계에서 재무국이 1차결정 예산을 내무국에 통보하며 첨부한 ‘영선공사실시계획조사요령(營繕工事實施計劃調査要領)’(이하 조사요령)을 따라야 했다.

이 조사요령은 일종의 문서작성기준으로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인 건축내역(용도·구조·면적)을 정리한 조사서와 배치도·평면도를 만들도록 했고, 그밖에 설비의 종류·용도·구조·수량, 토공·기타공사에 필요한 경비, 부지매수가 필요하면 위치·경역·평수·매수예상가를 적도록 했다. 건축에 수반되는 토목·설비·부지매수 등에 비용이 든다면 근거와 함께 제시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5번째 항목이 “예산부족을 초래할 계획변경을 하지 말

것”으로, 이 기준이 예산에 맞추어 공사실시계획서를 작성하라는 취지임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 요구를 접한 도는 5단계에서 1차결정 예산과 조사요령에 맞춘 공사실시계획서를 내무국에 보고한다. 11건이 남아 있는데(①에 4건, ②에 2건, ③에 5건) 상태가 양호한 도면을 제시한 경우 2건을 보면, 1931년 5월 4일 전북은 순창군청사 신축을 위해 1차결정 예산(12,600원)에 맞추어 공사내역을 정리하고 배치도(Fig. 10)와 평면도(Fig. 11)를 포함시켜 공사실시계획서를 보고한다(「군청사신영비예산배부의건-전라북도(郡廳舍新營費豫算配賦ノ件-全羅北道)」,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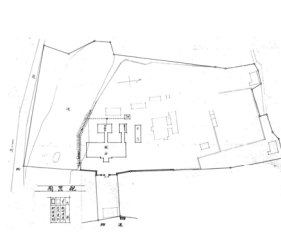


Fig. 12. Site plan for Sunchang-gun office's new construction source: ①CJA0002801(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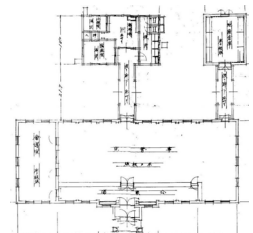


Fig. 13. Plan for Sunchang-gun office's new construction source: ①CJA0002801(1931)

또한 1931년 5월 14일 함남은 함흥부청사 신축을 위해 1차결정된 예산(22,500원)에 맞추어 공사내역을 정리하고 배치도(Fig. 12)와 평면도(Fig. 13)를 작성하여 공사실시계획서를 보고한다(「소화6년도부군청사신축실시계획의건 함경남도지사(昭和六年度府郡廳新築實施計劃ノ件咸鏡南道知事)」,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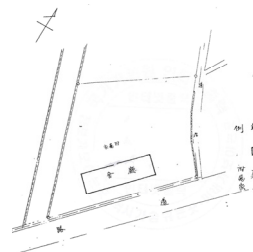


Fig. 14. Site plan for Hamheung-bu office's construction source: ②CJA0002800(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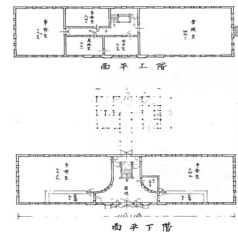


Fig. 15. Plans for Hamheung-bu office's construction source: ②CJA0002800(1931)

4.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1930년대 각도가 비정기적으로 건축인가를 신청한 사유는 3가지로 구분된다. 노후한 청사의 도괴위험과 불량한 실내 근무환경, 수해로 인한 청사 일부의 붕괴나 부지의 유실, 화재로 인한 청사의 전소나 일부 소실이다. 화재나 수해 등 재해로 위급한 상황보다 청사의 건축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도저히 청사로 사용하기 곤란할 때 신청되는 사례가 가장 많고 도·부·군청사 모두 포함된다. 정기적 건축인가신청으로 [1,2] 이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만큼 1930년대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상태가 전반적으로 열악했음을 말해준다.

둘째, 도의 신청부터 조선총독부의 인가 및 예산배부까지 행정절차는 8단계로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도-내무국(지방과)-재무국(회계과) 사이에 공문서를 주고 받았다. 신청이 한번에 예산배부로 이어지면 각 단계는 순차적으로 한번에 진행되지만, 인가가 늦어지거나 배부 예산이 부족하거나 인가되지 않은 청사에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건축수요가 생기는 등의 사정이 생기면 각도는 인가재촉, 예산증배, 신청대상청사 변경 등을 위해 내무국에 추가 건을 품신했다. 각도는 내무국 뿐 아니라 재무국, 정무총감, 심지어 조선총독에 이르기까지 예산배부에 영향을 미치는 조선총독부 다른 부국에도 별건을 발송하여 건축인가, 예산배부, 예산증배를 호소했다. 각도의 입장에서는 비정기적 신청을 통해서도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을 인가받기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상을 통해 1930년대 식민지조선의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상태가 매우 열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는 일제강점 초기부터 지방행정관청사로 전용되어온[7] 노후한 한옥도 여럿 있다. 이에 비해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인가 및 예산배부 권한을 가진 조선총독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비정기적 건축인가신청을 분석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1930년대 각도의 정기적 건축인가신청을 분석한 기존연구[1,2]의 결과를 강화하고 보완한다.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6.43>

- [2] M. S. Kim, "Demands for the new Construction of the *gun* Office Buildings on the Annual Expenditure Plans for 1928 by *Tos*", *Research in Engineering Design*, Vol.2, No.1, pp.60-71, June, 2017.
- [3] Order No. 42 of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Rule for the accounting affairs of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and affiliated offices", *Gazette of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Extra, Aug. 17, 1914.
- [4] National Archive of Korea, A Raisonne of the Japanese Empire Documents (Part of Local Administration I), National Archive of Korea, pp.616-627, 2006.
- [5] *Jeonrabuk-do* office edit., *Jeonbuk's Historic Site, Jeonrabuk-do*, The Year of Issue is Unknown, p.43.
- [6] "Completion Ceremony of *Hongwon-gun* Office Construction", *Maeilsinbo* 1934.12.19.
- [7] M. Kim, "Remodeling and Extension of reused *Goon* (郡) Office Building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7, pp.4992-4998, July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7.4992>

김 명 선(Myungsun Kim)

[중신회원]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관심분야>

한국근대건축사, 건축문화재, 건축리모델링

References

- [1] M. S. Kim, "Procedure and Document Format for Requesting Construction of Local Administrative Offices by each Province in the 1930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6, pp.43-49, June, 2021.